

강원관광대학 졸업·수료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의 학칙 제 46조, 제 47조, 제 48조에 따른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졸업이란 학칙 제 46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학사 수여가 가능한 자이다.

② 수료자라 함은 2년 또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전문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하지 아니한 자.

제 3 조 (졸업 사정) 졸업사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 4 조 (심의 사항) ①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학과별 졸업자, 졸업유보자(수료자)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한다.

② 졸업사정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기록해야한다.

제 5 조 (졸업 유보자) ① 학칙 제 48조에 해당하는 자는 4학기 또는 6학기를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졸업 유보자(수료자)로 처리한다.

② 학칙 제 42조에 의거 졸업 유보자(수료자)는 재학 연한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후학기 졸업을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수업료 환산) ① 졸업 유보자의 학점 당 수업료 환산은 다음과 같다.

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.

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.

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.

4.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. 단, 백원단위에서 사사오입을 적용한다.

제 7 조 (졸업 유보자의 등록절차) ① 제 5조 1항에 해당되는 자는 교무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.

1. 학과(계열)의 수강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.

2. 학점 당 수업료 영수증 또는 수업료 영수증.

3. 행정지원처 등록금 납입.

4. 납입 통지서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.

5. 학과 교수회의 추천서 제출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.